

**응급조치에 사용할 장비 및 인력의 지정 대상 및 관리 기준** (제11조의2 관련)

| 분 야 별 |       | 장비 및 인력의 지정 대상 및 관리 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에너지   | 전기    | 예비전력 1,000MW 이상 유지할 수 있는 발전소 가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| 석유    | · 30일분의 석유 사용량을 30일 이내에 생산할 수 있는 생산능력 유지<br>· 연간 내수량의 일평균 사용량 55일분 석유 비축량 유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| 가스    | 최소 운영재고 19.6만톤 이상의 안전재고 유지 및 중단없는 공급을 위한 공급능력 유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정보통신  |       | 「방송통신발전 기본법」 제35조에 따른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상의 복구 우선순위 중 제2순위 이상의 대상에 대한 통신기능 유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교통수송  | 철도    | 1일 열차 운행률 30퍼센트 이상 유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| 항공    | · 항공사: 1일 항공기 운행률 50퍼센트 이상 유지<br>· 공항 운영: 항공기 운항이 다소 지연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중단되지 않는 공항 운영 유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| 항만    | 컨테이너 야드(CY) 장치율 85퍼센트 미만으로 운영 유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| 화물    | 컨테이너 야드(CY) 장치율 85퍼센트 미만으로 운영 유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| 도로    | 고속도로 및 우회도로 모두 교통 두절로 인터체인지(IC) 간 접근 불가능 지속 상태를 24시간 미만으로 유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| 기타    | 1일 지하철 운행률 40퍼센트 이상 유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금융    |       | 금융전산시스템 마비 상태를 12시간 미만으로 유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보건의료  | 의료서비스 | 응급의료기능 100퍼센트 유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| 혈액    | 1일 공급능력의 100퍼센트 이상 유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원자력   |       | 주제어실 근무주기를 24시간 미만으로 유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환경    | 소각    | 주 4일 이상(1일 8시간 이상) 쓰레기 반입 및 소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| 매립    | 주 4일 이상(1일 8시간 이상) 쓰레기 반입 및 매립시설 운영<br>[침출수 처리업무는 매일 8시간 이상 운영]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식용수   |       | 정수장(광역): 1일 식용수 공급량의 70퍼센트 이상 공급능력 유지<br>정수장(지방): 1일 식용수 공급량의 30퍼센트 이상 공급능력 유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기타 분야 |       | 그 밖에 재난발생에 대비하여 응급조치에 일시 사용할 장비 및 인력의 지정 대상 및 관리 기준 등은 재난발생 유형, 특성, 빈도, 기능 및 용도 등을 고려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별로 기준을 정하여 유지 |